

2019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문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명 : 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사업 내용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라. 사업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

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바. 대출 규모 : 총 ○○세대 (2019년 3차)

※ 신청자가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2. 사업 내용

가.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준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Rightarrow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2) 기준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8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Rightarrow 대출 가능금액 500만원/본인 부담금액 100만원)					
3) 임대주택: 보증금 5,000만원(본인부담금 25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000만원 (본인부담금 4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Rightarrow 대출 가능금액: 150만원)					

나.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

구분	신규 또는 재계약일(당해 연도)	잔금지급일
1차	2019. 1. 1. ~ 6. 20.	2019. 1. 1. ~ 7. 31.
2차	2019. 4. 1. ~ 8. 20.	2019. 4. 1. ~ 9. 30.
3차	2019. 7. 1. ~ 11. 20.	2019. 7. 1. ~ 2020. 12. 31.

다.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상환

대출금	상환 금액	상환기간	비고
3백만원 이하	매월 5만원	최장 60개월	
3백만원 초과 ~ 3백5십만원 이하	매월 6만원	최장 59개월	차액은
3백5십만원 초과 ~ 4백만원 이하	매월 7만원	최장 58개월	만기에
4백만원 초과 ~ 4백5십만원 이하	매월 8만원	최장 57개월	정 산
4백5십만원 초과 ~ 5백만원 이하	매월 9만원	최장 56개월	

라. 성실 상환자 10% 인센티브 지원

- 1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원료한 경우 : 대출금의 2% 해당액 지급
- 2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원료한 경우 : 대출금의 3% 해당액 추가지급
- 만기까지 정한기일에 상환을 원료한 경우 : 대출금의 5% 해당액 추가지급

3. 신청 대상

가. 공통 기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총 합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만 18세 이하 : 2001.1.1. 이후 출생자 (취학자녀 : 1997.1.1. 이후 출생자)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광역시(세종시 포함)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은 「LH 기존주택전세임대 분양가이드」 지역별 지원한도 기준에 준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다. 대출 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폐산)

※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 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4. 사업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대출 신청 서류 접수 (3회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2019. 4. 1.(월) ~ 4. 19.(금) 2차: 2019. 6. 10.(월) ~ 6. 28.(금) 3차: 2019. 8. 19.(월) ~ 9. 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유효 -접수 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이메일 발송 필수
최종 심사 대상자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2019. 5. 22.(수) 2차: 2019. 7. 26.(금) 3차: 2019. 10. 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자 발표 ① 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② 선정된 신청기관으로 공문발송 예정
대출 약정 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심사대상자 발표 시 대출약정절차 안내 예정(본 센터 홈페이지, 선정기관)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약정서류 제출해야 함 (신청기관에서 선정자로부터 제출받아 본 센터로 발송) 	
대출금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약정서류 접수 완료 후 일정에 맞춰 대출금 지급 	입금시기(예정): 1차 6월중, 2차 8월중, 3차_11월중

※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구분	구비서류	작성요령						
신청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1. 신청기관 종합표(엑셀) 서식2. 신청기관 신청서(한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서식1~5) 참조 -종합표는 작성요령에 맞춰 정확한 내용 기입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 						
필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3.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5. 상환계획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원료한 경우 ①(확정일자 받은)기준계약서(사본) ②(확정일자 받은)신규계약서(사본) 서식4. 사실확인서(해당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 -신청서식의 참고용(작성예시) 상환계획서 참고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② 무상임차·비주거 거주자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본 및 사용대처확인서 제출 -시설거주자는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신청자	<table border="1"> <tr> <td>소득 증빙 서류 (택1)</td> <td>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5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기족 증명서 각 1부 </td> </tr> <tr> <td></td> <td>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기족 증명서 1부 </td></tr> <tr> <td></td> <td>3. 기준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td></tr> </table>	소득 증빙 서류 (택1)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5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기족 증명서 각 1부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기족 증명서 1부 		3. 기준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택1)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5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기족 증명서 각 1부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기족 증명서 1부 							
	3. 기준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 자	<table border="1"> <tr> <td>★ 실사평가서 기점부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 확인서(전체 납입회차 확인)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td> </tr> <tr> <td>신용회복 대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td></tr> <tr> <td>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자녀 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td></tr> </table>	★ 실사평가서 기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 확인서(전체 납입회차 확인)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신용회복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자녀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명의의 청약저축에 한함 -가구원 중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에 한함 -신용회복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
★ 실사평가서 기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 확인서(전체 납입회차 확인)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신용회복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자녀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서식 4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6. 서류 제출 순서

① (신청기관 담당자)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 전제출

- 이메일 제출처: hanbumo@seoul.go.kr
- 제목 및 파일명: "(기관명)_2019년 한부모기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파일압축)
- 서식1: 신청기관 총괄표는 엑셀파일 원본 발송
-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으로 파일 전환 후 발송
-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② (본 센터) 이메일 제출한 스캔자료 검토 후 등기우편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신청기관 직인, 원본대조(담당자 확인) 등 누락사항 검토
- 제출된 필수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검토 후 신청기관 담당자에 우선 안내



③ (신청기관 담당자) 원본 등기우편 제출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

서울특별시한부모기족지원센터 「2019년 한부모기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담당자 앞

-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

* 접수일자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미도착분은 인정되지 않음



④ (본 센터)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

7. 신청기관 유의 사항 ★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번호는 뒷 7자리를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3)」은 신청자 자필로 작성,
‘본인 확인 및 자필 확인’란은 신청기관 담당자가 직접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 「사실확인서(서식 4)」는 신청기관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기관 직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담당자 확인)’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신규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합니다.
- 주민번호 뒷 7자리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수정테이프 사용 혹은 볼펜으로 임의 수정
이 불가하므로 내용을 잘못 기입한 경우, 정정하지 말고 다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8. 대출 진행 기본 원칙

심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을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자금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
대출 사업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대출을 지금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형평성 고려)
신청 기관 협력지원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개인신청 불가)•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자금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약정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취합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가 변경될 경우, 본 센터로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 추후 대출지금이 원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기관에서는 대출지금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합니다.

9. 문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

홈페이지. www.seoulhanbumo.or.kr

T. 02-861-3011 | E. hanbumo@seoul.go.kr | F. 070-7469-3024